

**2018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
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재공고**

2018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2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

< 2018년 보건의료 R&D 중점 투자방향 >

'18년도 전략목표

1.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
2.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

7대 분야 중점투자방향

**사람 중심
질병 연구**

- ① **질환연구** 국민·연구자 수요 중심 질환극복 연구 확대
- ② **암관리** 한국형 암 정복을 위한 예방·진단·치료법 연구 강화

**미래 신산업
육성**

- ③ **미래 첨단의료**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융복합 연구 확대
- ④ **바이오 신산업** 첨단·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확대

**공익적 R&D
강화**

- ⑤ **공공복지 증진** 고비용 사회문제 해결 연구 강화
- ⑥ **재난대응** 백신주권 확보 및 신·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
- ⑦ **질병관리** 예방중심 질병연구역량 및 연구자원 활용 강화

I. 일반 현황

□ 통합 재공고 개요

구분	재공고단위 (RFP명)	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대상	과제구성요건
1. 질병 극복 분야	연구자 주도 질병극복	1-1. 의료기술 심화연구	· 300백만원/년 (1차년도 225백만원)	· 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·학·연·병	· 세부과제 2개 이상 · 기업참여 필수
2. 치매 분야	돌봄기술 개발	2-1. 치매환자 감지·보조기술	· 333백만원/년 (1차년도 250백만원)	· 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·학·연·병	· 세부과제 2개 이상 · 단, 기업체가 주관인 경우 단독 가능 · 기업참여 필수
3. 라이프 케어 융합 서비스 분야	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	3-1.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사전기획 연구	· 50백만원	· 9개월	산·학·연·병	·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
4. 신약 개발 분야	4-1.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		· 500백만원/년 (1차년도 375백만원)	· 2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	· 단독과제
5. 줄기 세포 재생 의료 분야	5-1.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(III)		· 200백만원/년 (1차년도 150백만원)	· 2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·학·연·병	· (주관) 임상시험 실시기관만 가능
	5-2. 허가용 기업주도 임상시험(SIT)		· 400~1,200백만원/년 (1차년도 300~900백만원)	· 2~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·학·연·병	· (주관) 기업만 가능
6. 감염병 분야	6-1. 면역백신개발		· 500~1,000백만원/년 (1차년도 375~560백만원)	· 4(2+2)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·학·연·병	· 세부과제 2개 이상 · 기업참여 필수
	6-2.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장		해당사업설명 참조			

II. 신청요건

-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해당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III. 신청 방법

-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기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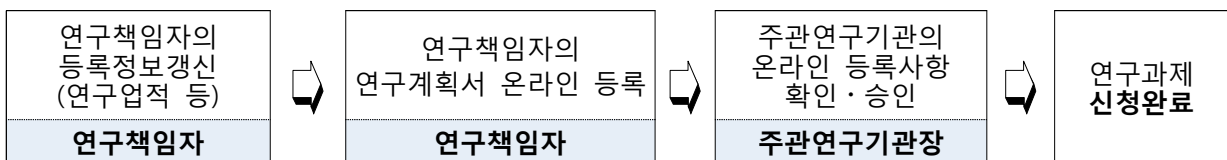
-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/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
※ 연구자(연구기관)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
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
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

○ 제출기한

※ 지원분야(RFP)별 신청마감시간(14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

※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(www.htdream.kr)에 공지함

※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구분	재공고단위 (RFP명)	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	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
1. 질병극복 분야	연구자주도 질병극복	1-1. 의료기술 심화연구	2018.2.13 (화) 14:00	
2. 치매 분야	돌봄 기술개발	2-1. 치매환자 감지·보조기술		
3.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분야	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	3-1.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		
4. 신약개발 분야	4-1.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			
5. 줄기세포· 재생의료 분야	5-1.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(III)			
	5-2. 허가용 기업주도 임상시험(SIT)			
6. 감염병 분야	6-1. 면역백신개발			
	6-2.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장			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보건의료기술진흥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시행령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 등
- ※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www.htdream.kr)

V. 기 타

□ 연구개시 예정일 : 2018년 4월 말

※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(6-2) 감염병 분야/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장은 공모계획 참조

□ 참여 제한
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33조에 따라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, 연구개시 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
-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
-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-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(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인 과제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며,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- 최종 연구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

□ 신청 제한
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- ※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- ※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3-44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」 참조

※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 ※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□ 참여기업부담금

※ 연구지원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 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1.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원 기준	2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3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
<p>가.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.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.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.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.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. 마.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,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.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,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. 그 밖의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※ 단, 사업단의 경우에는 사업단 본부과제와 사업단 세부과제를 각각 별도의 개별과제로 인정한다.</p>	<p>가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.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</p>	<p>가.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(대기업의 경우에는 현금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 나.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(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금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</p>

< 비 고 >

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2.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
3. “대기업”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.
※ ‘중견기업’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른 기업을 말함
4.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·부담 기준을 적용한다.
5.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3천만원 이상,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‘연구개발 과제 평가단’에서 심의 실시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’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
-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,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평가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에서 심의 실시
 -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(red.zeus.go.kr)를 통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
 - ※ 심의대상인 연구시설·장비가 심의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구축불가(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외)
 - 선정 이후 연도부터는 차기년도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예산을 심의하는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평가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의 본심의를 받아야 함(매년 5~7월 예정)
 - ※ 매칭펀드가 포함되어 1억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,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50% 이상인 연구시설·장비는 심의대상임
 - ※ 5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, 사전기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
 - ※ 세부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)」 참조

- 연구시설·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입(변경·취소) 심의 대상일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3천만원 이상(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)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'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(<http://nfec.ntis.go.kr>)'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제출해야 함
- “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” 제출
 -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'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'에서 “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
 - ※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」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
 - ※ 기술료 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용

※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모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(소관부처)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

(전문기관)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
www.htdream.kr

※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참조

○ 지원분야(RFP)별 담당자 안내

☞ 문의사항은 **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 질의응답(Q&A)**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구분	재공고단위 (RFP명)		사업내용(RFP) 안내		평가일정/절차 안내	
			담당부서 담당자	연락처 (043-713-****)	담당부서 담당자	연락처 (02-2194-****)
1. 질병극복분야	연구자 주도 질병극복	1-1. 의료기술 심화연구	의료기술R&D팀 유미영	8211	R&D평가팀 유주희	7285
2. 치매분야	돌봄기술 개발	2-1. 치매환자 감지·보조기술	특정질환R&D팀 김대원	8163	R&D평가팀 이기곤	7283
3. 라이프 케어 융합 서비스 분야	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	3-1.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사전기획 연구	한의약R&D팀 송어진	8938	R&D평가팀 허석인	043-713-8888
4. 신약개발 분야	4-1.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		제약바이오R&D팀 오하나	8445	R&D평가팀 이진	7286
5.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	5-1.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(III)		제약바이오R&D팀 강아람	8752	R&D평가팀 이기곤	7283
	5-2. 허가용 기업주도 임상시험(SIT)		제약바이오R&D팀 강아람	8752		
6. 감염병 분야	6-1. 면역백신개발		특정질환R&D팀 홍다혜	8530	R&D평가팀 이진	7286
	6-2.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장		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이치훈	043-719-8031	특정질환R&D팀 오세형	043-713-8268